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71호 2016.10. 6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6-20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승인사항 고시----- 2
- 사천시 고시 제2016-205호 관리처분계획[변경]인가 고시----- 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6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471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6 - 204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6. 10. 6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6-5호
2. 점용·사용 변경 승인 연월일 : 2016년 9월 30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노산공원 ~ 신수도 간 해저케이블 매설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신수동 60번지 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변경 면적 : 47㎡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6년 10월 01일 ~ 2019년 09월 30일 (3년)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투자유치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의 승인조건 : 불임 참조

사 천 시 공 보

제471호(3)

승 인 조 건

1. **승인목적 준수** : 피승인자는 승인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용·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**승인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승인** : 피승인자가 면적, 기간 등 본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점용·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3. **본 승인 관련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 이행 등**
 - 가. 시설물 주변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 - 나.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누전 및 단락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및 해양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다. 기 협의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 - 라. 동 시설물 운용과 관련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4. **문화재 관련** :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5. **지시사항 준수 및 이행** :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인·허가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, 타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6. **시설물의 관리**
 - 가. 설치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대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·시행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
 - 나. 설치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승인자의 부담으로 시설보수,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 - 다. 시설물 주변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71호(4)

7. 허가사항 취소 또는 행정처분

가. 공유수면관리법령과 승인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장래 산업단지 지정 및 공유수면 매립 등을 위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본 승인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, 이 처분으로 인해 피승인자가 입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청에게 일절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나. 공공 또는 공익사업 등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용승인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으며, 불승인 처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관리청의 지시에 대하여 피승인자는 일체의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8.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: 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점·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피승인자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, 동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
9. 승인 기간 만료시 연장신청 등 : 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승인(기간연장) 신청하여야 합니다.

10. 민원 해결 등 : 동 공유수면 점·사용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 할 경우 피승인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.

11. 승인조건의 이행 :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승인자는 본 승인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끝.

사 천 시 공 보

제471호(5)

사천시 고시 제2016- 205호

관 리 처 분 계 획 [변 경] 인 가 고 시

경상남도 고시 제2007-58(2007.03.02)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
사천시 고시 제2010-112(2010.09.28)호로 변경 결정 고시,
사천시 고시 제2011-143(2011.12.15)호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,
사천시 고시 제2012-121(2012.07.06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사천시 고시 제2016-17(2016.04.07)호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된 동
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
정비법』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
제3항의 규정에 이를 따라 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05일

사 천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명 칭 :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20-4, 38-1 번지

나. 면 적 : 29,453.50㎡(실사용 대지 면적 29,009.60㎡)

사 천 시 공 보

제471호(6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명 칭 :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991-7 번지
- 다. 대 표 자 : 김 영 고
- 라. 대 표 자 주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선제바위 37

4. 관리처분계획 [변경]인가일 : 2016.10.04

5. 관리처분계획 [변경]인가 주요 내용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용 도	건축면적(㎡)	건폐율(%)	층 수	세대수	비 고
		연면적(㎡)	용적율(%)			
29,009.6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,021.4963	20.76	지상21층 /지하1층	617세대	
		87,095.0445	229.57			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상가 면적 (㎡)	기타 건축 시설
	계	59㎡	74㎡	84㎡	103㎡	110㎡		
계	617	200	40	297	40	40	640.518	
토지등 소유자	390	200	40	117	20	13	640.518	
보류시설	2	-	-	2	-	-	-	
일반분양	225	0	0	178	20	27	-	
임 대	-	-	-	-	-	-	-	

사 천 시 공 보

제471호(7)

3)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(도시계획시설 포함)

신 설					용도폐지				
종류	명칭	규모	설치 비용	관리청	종류	명칭	규모	국공 유지 (m ²)	무상 양여 (m ²)
도로	대로 3-4	443.9m ²	조합 부담	사천시					

4)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: 2016. 12월경

6. 기 타

- 관계도서는 생략하며,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항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건축과 (☎ 055-831-32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